

**「한국은행 제주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
<p>&lt;신 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&lt;2024. 12. 27.&gt;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칙 신설</li> <li>- 시행일 명시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
<p>&lt;별표1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지원대상 코드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지원대상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지원부문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선 정 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벤처기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녹색기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략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다음 인증을 받은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 제16조의2, 제17조, 제18조에 따른 녹색기업, 환경표지·환경성적표지(EDP) 인증제품 생산 중소기업</li> <li>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획득한 설비 제조업체</li> <li>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(GR) 제품 생산기업</li> <li>- <b>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그린비즈(Green-Biz) 기업</b></li> </ul> </li> <li>②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10호 의한 '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'</li> <li>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5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(단, 태양력발전업체(KSIC 35114)는 제외)</li> <li>-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(KSIC 37~39)</li> <li>- 에너지저장장치 및 축전지 제조업체(KSIC 28114, 28202)</li> </ul> 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원대상 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 정 기 준	A2	벤처기업	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</li> </ul>	A4	녹색기업	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다음 인증을 받은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 제16조의2, 제17조, 제18조에 따른 녹색기업, 환경표지·환경성적표지(EDP) 인증제품 생산 중소기업</li> <li>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획득한 설비 제조업체</li> <li>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(GR) 제품 생산기업</li> <li>- <b>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그린비즈(Green-Biz) 기업</b></li> </ul> </li> <li>②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10호 의한 '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'</li> <li>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5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(단, 태양력발전업체(KSIC 35114)는 제외)</li> <li>-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(KSIC 37~39)</li> <li>- 에너지저장장치 및 축전지 제조업체(KSIC 28114, 28202)</li> </ul> </li> </ul>	<p>&lt;별표1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지원대상 코드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지원대상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지원부문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선 정 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벤처기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녹색기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략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다음 인증을 받은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 제16조의2, 제17조, 제18조에 따른 녹색기업, 환경표지·환경성적표지(EDP) 인증제품 생산 중소기업</li> <li>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획득한 설비 제조업체</li> <li>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(GR) 제품 생산기업</li> </ul> </li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삭 제&gt;</b></li> <li>②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10호 의한 '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'</li> <li>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5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(단, 태양력발전업체(KSIC 35114)는 제외)</li> <li>-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(KSIC 37~39)</li> <li>- 에너지저장장치 및 축전지 제조업체(KSIC 28114, 28202)</li> </ul> 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원대상 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 정 기 준	A2	벤처기업	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</li> </ul>	A4	녹색기업	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다음 인증을 받은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 제16조의2, 제17조, 제18조에 따른 녹색기업, 환경표지·환경성적표지(EDP) 인증제품 생산 중소기업</li> <li>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획득한 설비 제조업체</li> <li>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(GR) 제품 생산기업</li> </ul> </li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삭 제&gt;</b></li> <li>②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10호 의한 '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'</li> <li>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5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(단, 태양력발전업체(KSIC 35114)는 제외)</li> <li>-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(KSIC 37~39)</li> <li>- 에너지저장장치 및 축전지 제조업체(KSIC 28114, 28202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일부개정(24.7월 시행)에 따라 법률명을 수정</li> <li>- 중소기업부의 「우수 그린비즈(Green-Biz) 제도 운용규정」 폐지(24.7월 시행)에 따라 관련 선정기준을 삭제</li> </ul>
지원대상 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 정 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
A2	벤처기업	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
A4	녹색기업	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다음 인증을 받은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 제16조의2, 제17조, 제18조에 따른 녹색기업, 환경표지·환경성적표지(EDP) 인증제품 생산 중소기업</li> <li>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획득한 설비 제조업체</li> <li>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(GR) 제품 생산기업</li> <li>- <b>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그린비즈(Green-Biz) 기업</b></li> </ul> </li> <li>②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10호 의한 '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'</li> <li>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5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(단, 태양력발전업체(KSIC 35114)는 제외)</li> <li>-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(KSIC 37~39)</li> <li>- 에너지저장장치 및 축전지 제조업체(KSIC 28114, 28202)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 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 정 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
A2	벤처기업	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
A4	녹색기업	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다음 인증을 받은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 제16조의2, 제17조, 제18조에 따른 녹색기업, 환경표지·환경성적표지(EDP) 인증제품 생산 중소기업</li> <li>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획득한 설비 제조업체</li> <li>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(GR) 제품 생산기업</li> </ul> </li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삭 제&gt;</b></li> <li>②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10호 의한 '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'</li> <li>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5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(단, 태양력발전업체(KSIC 35114)는 제외)</li> <li>-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(KSIC 37~39)</li> <li>- 에너지저장장치 및 축전지 제조업체(KSIC 28114, 28202)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

<별표2>

**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<sup>1)</sup>**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
<u>&lt;신 설&gt;</u>	
운송 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
주점업	5621 주점업
금융 및 보험업	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
부동산업	68 부동산업
전문 서비스업	7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<u>&lt;신 설&gt;</u>
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
보건업	86 보건업
오락 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

주: 1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
<별표2>

**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<sup>1)</sup>**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
<b>전문 소매업</b>	<b>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</b>
운송 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
주점업	5621 주점업
금융 및 보험업	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
부동산업	68 부동산업
전문 서비스업	7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<b>731 수의업</b>
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
보건업	86 보건업
오락 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

주: 1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
-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(이하 “절차”) 개정 내용 반영  
○ 지원대상 제외업종 확대

- 「절차」 개정내용 반영  
○ 지원대상 제외업종 확대